

의안번호	2209440
의 퇴 인	박해철의원
회 답 일	2025.7.1.
추 계 번호	25B18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변화는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으로 구성됨

- (수입증가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에서 65%(단,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로 상향 조정할 경우 수입증가분은 2027년 1,745억원, 2030년 1,9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386억원(연평균 1,47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수입증가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	1,745	1,811	1,879	1,950	7,386	1,477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중 수입증가분을 산출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출증가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에서 65%(단,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출증가분은 2027년 491억원, 2030년 54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76억원(연평균 415억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지출증가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	491	509	528	548	2,076	41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중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사용주로서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고용에 대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증가분을 산출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 이상의 범위(단,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제3항(사업주 의 부담금 납부 등)	○	•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재정변화를 산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감안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¹⁾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
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
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공과금을 말함²⁾
 - **(제도개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
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5년 4월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저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금액을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부담기초액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현행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약 60% 수준에서 결정됨³⁾

[표 3]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

(단위: 원)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i=1$, A)	1/2이상 3/4미만 ($i=2$, B)	1/4이상 1/2미만 ($i=3$, C)	1/4미만 ($i=4$, D)	장애인고용률 0% ($i=5$, E)
부담 기초액	1,258,000 (A/E = 60.0%)	1,333,480 (B/E = 63.6%)	1,509,600 (C/E = 72.0%)	1,761,200 (D/E = 84.0%)	2,096,270 (월 최저임금액)

주: 1.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2. 비율에 따른 인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표 4]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2020~2025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기초액	1,078,000원	1,094,000원	1,149,000원	1,207,000원	1,237,000원	1,258,000원

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자료: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8호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9호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1호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이상,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임
-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 증가분”)과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액(이하 “지출 증가분”)으로 구성됨
 - (수입 증가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 수입⁴⁾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범위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65에서 최대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증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증가분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입 증가분을 산출
 - － 참고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해야하며⁵⁾,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4) 사업코드: 59-593

5) 고용노동부, 「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1」, 2024.

[표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정부	공무원	비대상	49,195	53,987	72,016	136,858
	비공무원	9,358	9,013	6,283	7,813	8,485
공공기관		32,427	32,918	25,629	29,607	26,680
민간기업		713,970	676,484	677,789	720,145	723,343
합계		755,756	767,611	763,688	829,580	895,36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지출 증가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지출 증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출 증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발생 현황을 토대로 검토하며, 2024년 기준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9,170억원)에 대한 지출은 2025년 이루어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의 3%를 할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⁶⁾
 -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부칙에 따른 감면(교육감 50%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동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⁷⁾
 - 이후 2021년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 7) 「법률 제145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제9항, 제3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종전에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통해 교육감의 경우 시행일부터 3년간 동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⁸⁾

[표 6]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정부	공무원	48,595	53,520	72,232	136,501	160,245
	비공무원	7,245	6,144	7,669	8,693	14,832
공공기관		33,374	26,478	34,891	27,985	25,395
민간기업		690,495	690,784	743,766	744,340	716,508
합계		779,709	776,926	858,559	917,519	916,98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재정변화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현행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이하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장애인고용률 구간별 의무고용률 대비 미고용인원(이하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산출

○ (부담기초액의 차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부담기초액의 차이는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에서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부담기초액을 차감하여 산출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최저임금과 동일하므로 이 구간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를 제외한 장애인고용률이 1/2 이상 3/4 미만인 경우($i=2$)와 1/4 이상 1/2 미만인 경우($i=3$), 1/4 미만인 경우($i=4$) 등은 2025년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대비 부담기초액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기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최저임금액의 60→사업장 규모에 따라 65%에서 최대 80%)을 고려하여 산출

8)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7]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산출
(최저임금액의 6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률 구간	현행		개정안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A)	1구간과의 차이 (B=A-60.0%)	개정조항을 고려한 가중치 (C=7/8×B)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D=65.0%+C)
i=1	60.0%	—	—	65.0%
i=2	63.6%	3.6%p	3.2%p	68.2%
i=3	72.0%	12.0%p	10.5%p	75.5%
i=4	84.0%	24.0%p	21.0%p	86.0%
i=5	100.0%	40.0%p	35.0%p	100.0%

주: 1. i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 정도를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액과 구간별 부담기초액의 차이를 산출

[표 8]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추정치): 2026~2030년
(최저임금액의 6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단위: 원)

	장애인고용률구간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 (A)	i=1	1,306,453	1,355,864	1,406,927	1,459,970	1,516,049
	i=2	1,384,840	1,437,216	1,491,342	1,547,568	1,607,012
	i=3	1,567,743	1,627,037	1,688,312	1,751,964	1,819,259
	i=4	1,829,034	1,898,210	1,969,697	2,043,958	2,122,468
	i=5	2,177,009	2,259,346	2,344,434	2,432,823	2,526,270
개정안 (B)	i=1	1,415,056	1,468,575	1,523,882	1,581,335	1,642,075
	i=2	1,483,664	1,539,778	1,597,767	1,658,005	1,721,691
	i=3	1,643,750	1,705,918	1,770,164	1,836,902	1,907,459
	i=4	1,872,444	1,943,262	2,016,446	2,092,469	2,172,843
	i=5	2,177,009	2,259,346	2,344,434	2,432,823	2,526,270
차이 (C=B-A)	i=1	108,603	112,711	116,956	121,365	126,027
	i=2	98,824	102,562	106,425	110,437	114,679
	i=3	76,007	78,882	81,852	84,938	88,201
	i=4	43,410	45,052	46,749	48,512	50,375
	i=5	0	0	0	0	0

주: 1. i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65%에서 최대 85%)으로 인한 부담기초액 차이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도표와 같음

[표 9] 사업장 규모별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추정치): 2025~2030년
(단위: 원)

구분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80%	$i=1$	419,016	435,155	451,613	468,621	486,288	504,967
	$i=2$	381,287	395,972	410,948	426,425	442,502	459,499
	$i=3$	293,252	304,547	316,065	327,968	340,333	353,405
	$i=4$	167,487	173,938	180,517	187,315	194,377	201,843
	$i=5$	0	0	0	0	0	0
75%	$i=1$	314,203	326,304	338,645	351,399	364,647	378,654
	$i=2$	285,911	296,923	308,153	319,758	331,813	344,559
	$i=3$	219,897	228,367	237,004	245,929	255,201	265,004
	$i=4$	125,592	130,429	135,362	140,460	145,755	151,354
	$i=5$	0	0	0	0	0	0
70%	$i=1$	209,389	217,454	225,678	234,177	243,006	252,340
	$i=2$	190,535	197,874	205,357	213,091	221,125	229,619
	$i=3$	146,543	152,187	157,943	163,891	170,070	176,602
	$i=4$	83,696	86,920	90,207	93,604	97,133	100,864
	$i=5$	0	0	0	0	0	0
65%	$i=1$	104,576	108,603	112,711	116,956	121,365	126,027
	$i=2$	95,159	98,824	102,562	106,425	110,437	114,679
	$i=3$	73,188	76,007	78,882	81,852	84,938	88,201
	$i=4$	41,801	43,410	45,052	46,749	48,512	50,375
	$i=5$	0	0	0	0	0	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고용인원)** 2024년 결산 기준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어 실제 미고용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장애인 미고용인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24년 결산 기준 장애인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교육감 50% 감면, 일시납 3% 감면)에 따라 수입 증가분과 지출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래에 발생할 실제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 규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의 변동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행태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나. 수입증가분

□ 개정안에 따른 수입증가분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지출 증가액”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를 적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납부 시점을 고려하여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6년에 납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산
- 개정안에 따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나누어 산출
-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개정안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에 대한 고용부담금 산정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증가분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

(1)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미고용인원)** 2024년 결산 기준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0]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i=1$	553	363	526	2,522
$i=2$	3,900	483	378	9,029
$i=3$	5,659	99	172	6,521
$i=4$	0	0	0	1,782
$i=5$	0	0	0	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2024년 12월 말 기준

3. 2024년 월평균 1,000명 이상 의무고용 사업주 대상 추출

자료: 고용노동부

- **(공무원)** 현행법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2,888	2,997	3,110	3,227
$i=2$	—	18,532	19,232	19,957	20,709
$i=3$	—	20,681	21,463	22,272	23,111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42,100	43,693	45,338	47,04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 현행법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비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2]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896	1,967	2,041	2,118
$i=2$	—	2,295	2,382	2,472	2,565
$i=3$	—	362	375	390	404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4,552	4,725	4,902	5,08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행법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3]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공기관):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2,747	2,851	2,958	3,069
$i=2$	—	1,796	1,864	1,934	2,007
$i=3$	—	629	652	677	702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5,171	5,367	5,569	5,779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기업) 현행법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민간기업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4]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민간기업):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3,170	13,668	14,182	14,717
$i=2$	—	42,903	44,525	46,202	47,944
$i=3$	—	23,831	24,733	25,664	26,632
$i=4$	—	3,719	3,860	4,006	4,157
$i=5$	—	0	0	0	0
합계	—	83,623	86,786	90,054	93,449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7년 1,304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5]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	467	484	502	521
공공기관	—	52	54	56	58
민간기업	—	836	868	901	934
합계	—	1,354	1,406	1,459	1,51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미고용인원)** 2024년 결산 기준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6]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i=1$	174	24	36	737
$i=2$	393	0	37	1,922
$i=3$	52	0	92	2,174
$i=4$	0	0	34	1,018
$i=5$	0	0	0	169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2024년 12월 말 기준

3. 2024년 월평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의무고용 사업주 대상 추출

4. 공무원 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말 기관 정원 기준으로 고용의무인원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 **(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7]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681	707	734	761
$i=2$	—	1,400	1,453	1,508	1,565
$i=3$	—	143	148	153	159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2,224	2,308	2,395	2,485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비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8]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94	98	101	105
$i=2$	—	0	0	0	0
$i=3$	—	0	0	0	0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94	98	101	105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9]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공기관):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41	146	152	158
$i=2$	—	132	137	142	147
$i=3$	—	252	262	272	282
$i=4$	—	53	55	57	59
$i=5$	—	0	0	0	0
합계	—	578	600	623	646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기업)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0]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민간기업):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2,886	2,995	3,108	3,225
$i=2$	—	6,848	7,107	7,375	7,653
$i=3$	—	5,958	6,183	6,416	6,658
$i=4$	—	1,593	1,654	1,716	1,781
$i=5$	—	0	0	0	0
합계	—	17,285	17,939	18,614	19,316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상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7년 202억 원 등으로 추계됨

[표 2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	23	24	25	26
공공기관	—	6	6	6	6
민간기업	—	173	179	186	193
합계	—	202	209	217	22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미고용인원) 2024년 결산 기준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2]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i=1$	6	6	26	756
$i=2$	0	6	44	1,278
$i=3$	9	0	17	1,826
$i=4$	0	0	0	793
$i=5$	0	0	0	479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2024년 12월 말 기준

3. 2024년 월평균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의무고용 사업주 대상 추출

자료: 고용노동부

- **(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3]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6	16	17	17
$i=2$	—	0	0	0	0
$i=3$	—	16	17	18	18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32	33	35	36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비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4]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6	16	17	17
$i=2$	—	14	15	15	16
$i=3$	—	0	0	0	0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30	31	32	33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5]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공기관):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68	70	73	76
$i=2$	—	104	108	113	117
$i=3$	—	31	32	33	35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203	211	219	22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기업)**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민간기업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6]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민간기업):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1,973	2,047	2,124	2,205
$i=2$	—	3,035	3,149	3,268	3,391
$i=3$	—	3,335	3,461	3,591	3,727
$i=4$	—	827	858	891	924
$i=5$	—	0	0	0	0
합계	—	9,169	9,516	9,874	10,24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상시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7년 94억 원 등으로 추계됨

[표 27]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	1	1	1	1
공공기관	—	2	2	2	2
민간기업	—	92	95	99	102
합계	—	94	98	102	10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미고용인원)** 2024년 결산 기준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8]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미고용인원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i=1$	2	4	70	2,157
$i=2$	8	3	68	2,827
$i=3$	0	3	42	3,142
$i=4$	0	0	8	355
$i=5$	3	0	8	3,242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2024년 12월 말 기준

3. 2024년 월평균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의무고용 사업주 대상 추출

4. 공무원 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 기관 정원 기준으로 고용의무인원을 산정하며, 규모에 상관 없이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되므로, 정원 100명 미만도 포함하여 산정됨

자료: 고용노동부

- **(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29]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3	3	3	3
$i=2$	—	9	10	10	11
$i=3$	—	0	0	0	0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12	13	13	14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비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30]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비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5	5	6	6
$i=2$	—	4	4	4	4
$i=3$	—	3	3	3	3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12	12	12	13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3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공기관):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91	95	98	102
$i=2$	—	81	84	87	90
$i=3$	—	38	40	41	43
$i=4$	—	4	4	4	5
$i=5$	—	0	0	0	0
합계	—	214	222	231	24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기업)**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이([표 9] 참조)×12개월×2024년 기준 민간기업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32]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민간기업):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i=1$	—	2,811	2,917	3,027	3,141
$i=2$	—	3,353	3,479	3,610	3,746
$i=3$	—	2,866	2,974	3,086	3,203
$i=4$	—	185	192	199	207
$i=5$	—	0	0	0	0
합계	—	9,214	9,563	9,923	10,29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7년 95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33]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	0	0	0	0
공공기관	—	2	2	2	2
민간기업	—	92	96	99	103
합계	—	95	98	102	10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7년 1,745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34]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공무원	—	444	460	478	496
	비공무원	—	47	49	50	52
	소계	—	491	509	528	548
공공기관		—	62	64	66	69
민간기업		—	1,193	1,238	1,285	1,333
합계		—	1,745	1,811	1,879	1,95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지출증가분

□ 본 추계서의 지출증가분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지출증가분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과 지출 사이의 시차와 추정, 환급, 오신고 등으로 인해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과 지출 사이의 시차와 이로 인한 기회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지출증가분은 2027년 491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35]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지출증가분(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	—	444	460	478	496
비공무원	—	47	49	50	52
합계	—	491	509	528	54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이며, 주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실제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의 미고용인원은 2024년 결산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장래에 발생한 미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면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